

영국의 개정통합규범에 관한 고찰

오성근*

I. 서 설

III. 개정통합규범의 최선의 관행
(Code of Best Practice)

II. 2003년 개정통합규범의 전문(Preamble)

I. 서 설

영국은 2006년 11월 8일 여왕의 승인(royal assent)에 의거 2006년 회사법(Companies Act 2006)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¹⁾ 동 법률은 전면적인 개정작업부터 입법까지 8년에 걸쳐서 마련된 것이다. 영국의 통산산업부는(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는 1992년 이후 회사법의 모든 영역에 대하여 수정작업을 진행시켜 왔는데, 1998년부터는 회사법의 전면개정작업에 착수하여 회사법 개정검토위원회(Company Law Review Steering Group)로 하여금 회사법 현대화를 위한 검토작업을 진행하게 하여 2002년 7월 ‘회사법의 현대화’(Modernising Company Law)라는 제하의 백서를 공표하였다.²⁾

그 후 통산산업부는 엔론 사건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회사법 일부개정법의 제정 등을 선행 시킨 후 2005년 3월 개정법안을 첨부한 ‘회사법개혁’(Comopany Law Reform)³⁾이라는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이종기, “영국회사법상 이사의 의무,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대표소송, 의무위반의 사전승인 : 2006년 개정 회사법을 중심으로”, 「한국상사법학회 2008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한국상사법학회, 2009), 9면.

2) Cm. 5553- I, II (2002, 7).

3) Cm. 6465(2005, 3).

제하의 백서를 재차 공표하였다. 이후 동년 7월, 9월 및 10월 많은 조문안이 추가되어 2005년 11월 회사법 개정법안(the Company Law Bill)이 상원에 제출되었다.⁴⁾ 이 개정법안은 상원의 심의를 거쳐 2006년 5월에 하원에 송부되었다. 하원에서의 심의과정에서 법안의 명칭이 회사법안(the Companies Bill)으로 변경되어 약간의 수정이 가하여진 후 2006년 10월 동 수정안의 심의를 위하여 상원에 재제출되었다. 그리고 2006년 11월 8일 2006년 회사법으로 성립되었다.

2006년 회사법은 현행 회사총괄법인 1985년 회사법(Companies Act 1985, c. 6)의 대부분의 조문과 1989년 회사법(Companies Act 1989, c. 40) 및 2004년 회사(회계감사, 조사 및 지역사회기업)법(Companies(Audit, Investigations and Community Enterprise) Act 2004, c. 27)의 규정⁵⁾을 수정함과 동시에 회사법 판례의 일부를 수용하여 조문화하였다. 그리고 EU의 지침⁶⁾에 대응하여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c. 8)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문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6년 회사법은 총47편, 1,300개의 조문 및 16개의 부속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⁷⁾ 다만 2006년 회사법의 위치는 종래 1985년 회사법의 부분 개정법에 머무르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효력을 가지는 1985년 회사법 등의 규정과 2006년 회사법의 모든 규정을 포함한 새로운 회사총괄법의 제정은 아직까지는 예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2006년 회사법은 효율적인 법제를 마련하여 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영국 정부도 큰 기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⁸⁾ 우리 법제에도 참고할 규정이 적지 아니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2006년 회사법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수차례 위원회의 보고서의 권고사항과 규범의 내용을 집약하여 제정된 것인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규범 중의 하나가 2003년 개정통합규범(The Combined Code on Corporate Governance, 2006. 7)이다. 따라서 영국의 2006년 회사법을 이해하는데, 특히 영국의 현행 지배구조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2003년 개정통합규범에 대한 분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영국의 2003년 개정통합규범은 대체로 2003년 1월 발표된 히크위원회(Higgs Committee)의 최종보고서인(이하 ‘히크보고서’라고 한다) 「비상근이사의 역할과 효율성에 관한 재검토」(Review of the Role and Effectives of Non-Executive Director)의 내용⁹⁾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이다. 그리고 이 글에서 동 규범을 ‘통합규범’이 아닌 ‘개정통합규범’이라고 칭하는 것은 1998년 6월에 공표된 이른바 함펠위원회(the Hampel Committee on Corporate Governance)가 공표한 통합규범(the Combined Code)을 개정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¹⁰⁾

한편 2006년 6월에도 통합규범(The Combined Code on Corporate Governance, 2006. 6)이 공표되었으나, 그 내용은 2003년 개정통합규범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여 2006년 회사법 제정에 달리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¹¹⁾

4) 윤영신, “영국의 회사법 개정방향과 시사점”, 『상장협연구』제54호(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6), 79면.
5)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송석언 “영국회사법상 회계감사(조사)제도에 관한 고찰”, 『고려법학』, 제49호(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881-906면.
6)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오성근 “영국의 회사법제상 이사의 의무 및 입법적 효용성”, 『상장협연구』 제27권 제3호(한국상사법학회, 2008), 51면.
7) 영국 회사법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편 통칙(Part 1 General Introductory Provisions), 제2편 회사의 설립(Company Formation), 제3편 회사의 정관(A Company Constitution), 제4편 회사의 능력 및 관련사항(A Company's Capacity and Related Matters), 제5편 회사의 상호(A Company's Name), 제6편 회사의 등기사무소(A Company's Registered Office), 제7편 회사종류의 변경과 재등기(Re-Registration as a Means of Altering a Company's Status), 제8편 회사의 사원(A Company's Members), 제9편 사원의 권리행사(Exercise of Members Rights), 제10편 회사의 이사(A Company's Directors), 제11편 사원의 대표소송 및 절차(Derivative Claims and Procedure by Members), 제12편 회사의 비서(Company Secretaries), 제13편 주주총회 등과 결의 등(Resolutions and Meetings), 제14편 정치헌금 등의 규제(Control of Political Donations and Expenditure), 제15편 계산서류 등과 보고 등(Accounts and Reports), 제16편 회계감사(Requirement for Audited Accounts), 제17편 회사의 주식자본(A Company's Share Capital), 제18편 유한책임회사의 자기주식취득(Acquisition by Limited Company of Its Own Shares), 제19편 사채(Debentures), 제20편 사회사 및 공개회사(Private and Public Companies), 제21편 증서 및 증권 양도(Certificate and Transfer of Securities), 제22편 회사주식 등의 이해관계에 관한 정보(Information About Interests in a Company's Shares), 제23편 분배(Distributions), 제24편 회사의 연차보고(A Company's Annual Return), 제25편 회사의 담보(Company Charges), 제26편 정리 및 재편(Arrangements and Reconstructions), 제27편 공개회사의 합병 및 분할(Mergers and Divisions of Public Companies), 제28편 주식공개매수 등(Takeovers Etc), 제29편 사기적 거래(Fraudulent Trading), 제30편 불공정침해에 대한 사원보호(Protection of Members against Unfair Prejudice), 제31편 해산 및 등기의 회복(Dissolution and Restoration to The Register), 제32편 회사조사 : 개정(Company Investigations : Amendments), 제33편 회사법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설립된 영국회사(UK Companies Not Formed Under Companies Legislation), 제34편 외국회사(Overseas Companies), 제35편 회사등기(The Registrar of Companies), 제36편 회사법상 범죄(Offences Under The Companies Acts), 제37편 회사 : 보칙(Companies : Supplementary Provisions), 제38편 회사 : 정의규정(Companies : Interpretation), 제39편 회사 : 부분개정(Companies : Minor Amendments), 제40편 회사이사 : 외국에서의 자격박탈 등(Company Directors : Foreign disqualification ETC), 제41편 사업명(Business Names), 제42편 회계감사임원(Statutory Auditors), 제43편 투명성의무 및 관련 사항(Transparency Obligations and Related Matters), 제44편 세칙(Miscellaneous Provisions), 제45편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 제46편 일반 보칙(General Supplementary Provisions), 제47편 잡칙(Finanal Provisions) 등이 그에 해당한다.

8) 2006년 회사법의 경제적 기대효과에 대하여는 오성근, 전계 논문, 51면 참조.
9) 히크보고서의 제안에 관한 내용은 오성근, 전계 논문, 42-45면 참조.
10) 이에 관한 주요 내용은 송석언, 전계 논문, 886-887면 ; 최준선, “미국과 영국의 기업지배구조와 그 동향”, 『비교사법』, 제6권 제1호(한국비교사법학회, 1999), 60면; 강희갑·권기범·정호열·원용수, “주요 유럽국가의 회사지배구조의 최근 동향과 주식회사의 경영감독에 대한 개선 논의”, 『상사법연구』, 제20권 제1호(한국상사법학회, 2001), 339-340면.
11) http://www.ecgi.org/codes/documents/irc_combined_code_june2006.pdf 참조.

II. 2003년 개정통합규범의 전문(Preamble)

1. 동 규범은 1998년 6월 햄펠경을 위원장으로 한 기업지배구조위원회(the Hampel Committee on Corporate Governance)가 공표한 통합규범을 수정하고, 대체한다. 동 규범은 데릭히스의 “비상근이사의 역할과 실효성에 관한 재검토(a review on the role and effectiveness of non-executive directors)” 및 로버트스미스 경(Sir Robert Smith)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공표한 “감사위원회에 대한 재검토(a review of audit committees)”¹²⁾의 내용을 계수하는 것이다.
2. 금융서비스기구(th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는 상장규칙에 부속(annexed to the Listing Rules)하는 1998년 통합규범을 폐지하여 동 규범으로 대체하고, 그에 따르는 상장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필요한 상장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협의가 예정되어 있으나, 동 규범 그 자체에 대한 협의는 없다.
3. 동 규범은 2003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4. 동 규범은 주요원칙(main principles)과 보조원칙(supporting principles) 그리고 규범 조항(provisions)으로 구성된다. 현행 상장규칙은 상장회사에 대하여 통합규범에 관한 2개 부문의 공시설명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제1의 부문에 따르면 회사는 통합규범원칙의 적용 방법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야 한다. 향후 이 부문은 주요원칙과 보조원칙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해당 설명에 대한 제1의 부문의 양식 및 기재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 취지는 상장회사가 독자적인 방법으로 해당 회사의 지배구조정책을 통합규범의 원칙에 비추어 설명하여야 하고, 해당 회사의 적합한 특정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게 된 특단의 사정도 설명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 제2의 부문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규범조항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여야 하는데,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준수하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설명하라”는 접근 방식(‘comply or explain’ approach)은 10년 이상 적용되어야 하고, 그에 따르는 유연성은 이사회 그리고 투자자로부터 광범위하게 지지를 받고 있다. 회사의 설명을 평가하는 것은 주주 및 그 밖의 자이다.

5. 대부분의 경우 상장회사는 규범조항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특정한 상황 하에서는 규범조항으로부터의 이탈(departure)이 정당화 될 수 있다. 모든 회사는 각각의 규범조항을 주의 깊게 검증하여야 하고, 규범조항으로부터 이탈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 설명을 하여야 한다.
6. 소규모상장회사(Small listed companies), 특히 신규상장회사는 약간의 규범조항이 당해 회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규범조항 중에는 FTSE 350 이하의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회사가 동 규범의 접근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여겨도 무방하고, 오히려 그렇게 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투자회사(Investment companies)는 일반적으로 이사의 구조가 다른데, 그 점은 특정한 규범조항의 관련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7. 기업지배구조의 평가에 관심을 갖는 자들은 이사가 회사의 소유자인 주주에 의하여 선임 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상호이해에 기초한 협동 및 신뢰를 촉진하기 위하여(to promote partnership and trust) 상식을 가지고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자들은 개개 회사의 사정에 대하여 적절한 배려를 하여야 하고, 당해 회사의 규모 및 복잡성 그리고 당해 회사가 직면한 위험과 도전(risk and challenge)의 성질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주주는 회사의 설명을 납득할 수 없으면,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회사의 설명은 기계적으로 평가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동 규범으로부터의 이탈도 당연히 위반행위로서 취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관주주 및 그 대리인들(Institutional shareholders and their agents)은 ‘준수 하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설명하라’고 하는 원칙을 지지한 후, 회사의 설명에 대하여 주의

12) 감사위원회통합규범지침(2003, 1)(Audit Committee Combined Code Guidance”, published January 2003).

깊게 대응하여야 한다. 기관주주는 통합규범 제2조(Section 2)에서 기술하는 원칙을 명백히 할 수 있도록 동 규범으로부터의 일탈에 대하여 행한 설명을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하고, 사안별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기관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자기의 견해를 밝히고, 회사 측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는 대화를 하여야 한다. 기관주주는 필요한 경우 자기의 견해를 서면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8. 통합규범의 어떠한 문언도 주주를 정보수집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법률상의 일반적인 요청을 무시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9. 본 공표는 통합규범의 특정한 부분의 준수방법에 관한 지침(guidance)을 포함한다. 첫째는 턴벌위원회(Turnbull Committee)가 작성한 “내부통제 : 이사를 위한 통합규범 지침(Internal Control : Guidance for Directors on the Combined Code)”¹³⁾이고, 내부통제에 관한 규범조항(동 규범 C.2 및 C.3의 일부)과 관련이 있다. 둘째는 스미스 위원회(Smith Group)가 작성한 “감사위원회 : 통합규범지침(Audit Committees : Combined Code Guidance)”이며, 감사위원회 및 회계감사인에 관한 규정(audit committees and auditors)(동 규범 C.3)과 관련이 있다. 두 지침 모두는 관련 규범 원칙의 적용방법과 관련하는 규범조항의 준수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10. 이 밖에 본 공표는 히스보고서(Higgs report)로부터 발췌한 실무관행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11. 개정통합규범은 개정전 통합규범이었던 이사보수의 공시에 관한 요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현재 “2002년 이사보수보고서규칙(The Directors’ Remuneration Report Regulation 2002)”¹⁴⁾이 시행되고 있으며, 개정전 통합규범의 조항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규칙은 회사의 이사회에 대하여 보수보고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III. 개정통합규범의 최선의 관행(Code of Best Practice)

제1조 회사(Companies)

A. 이사(Directors)

A.1 이사회(The Board)

주요원칙(Main Principle)

모든 회사는 효과적인 이사회가 이를 주도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회사의 성공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보조원칙(Supporting Principle)

이사의 역할은 위험의 평가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신중하고 효과적인 통제 구조 중에서 기업의 진취적인 지도력(entrepreneurial leadership)을 발휘하는데 있다. 이사회는 회사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회사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무적 그리고 인적 자원(financial and human resources)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하고, 경영성과(management performance)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회사의 가치기준 및 표준(company’s values and standards)을 설정하여야 하고, 주주 기타의 자에 대한 회사의 의무를 이해한 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비상근이사(non-executive directors)는 일원제이사의회의 구성원으로서(as a member of a unitary board)의 역할의 일부로서 전략에 관한 제안에 대하여 전향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그 제안이 도입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비상근이사는 경영성과가 합의된 목표 및 목적(agreed goals and objective)을 충족시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자세히 조사하고 성과보고에 관하여 감시하여야 한다. 비상근이사는 재무정보의 완전성(integrity of financial

13) “내부통제 : 이사를 위한 통합규범 지침(Internal Control : Guidance for Directors on the Combined Code)”, 잉글랜드·웨일즈 공인 회계사협회(1999, 9).

14) “2002년 이사보수보고서규칙(The Directors’ Remuneration Report Regulation 2002)” (S. I. no. 1986).

information), 위험관리를 위한 재무통제 및 재무체계가 건전하다는 점을 확신시켜야 한다. 비상근이사는 상근이사보수(remuneration of executive directors)의 적절한 수준을 결정하여야 할 책임을 지고, 상근이사를 선임하고, 필요에 따라 상근이사를 해임하며, 그 후계자 결정계획(succession planning)을 수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규범조항(Code Provisions)

A.1.1

이사회는 그 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것으로 특히 유보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열거한 공식규칙(formal schedule)을 마련하여야 한다. 연차보고서(annual report)에는 이사회가 어떠한 결의를 하였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항이 경영자에게 위임되었는지에 관한 회사경영상충부의 설명(a high level statement)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사회의 운영상황에 설명도 포함되어야 한다.

A.1.2

연차보고서에는 이사회의장, 부의장(the deputy chairman)(존재하는 경우), 최고상근이사(the chief executive), 상위독립이사(the senior independent director) 및 지명위원회 · 감사위원회 · 보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성명이 기재되어야 한다. 그리고 연차보고서에는 이사회 및 각종위원회의 개최회수(number of meetings)와 각각의 회의에서의 이사의 출석 상황이 기재되어야 한다.

A.1.3

이사회의장은 상근이사를 출석시키지 않고 비상근이사와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비상근 이사는 상위독립이사의 주도로 적어도 연 1회는 이사회의장의 업적(A.6.1의 규정에 따라)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이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장을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A.1.4

이사는 회사의 경영 또는 제안된 행위의 문제점에 관하여 주의 깊게 고찰하여야 하고, 문제점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사록(board minutes)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비상근이사는 사직을 하는 때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있으면, 이사회의장에 대하여 서면(written statement)으로 그 사항을 제공하여야 하고, 이사회의장은 이를 이사회에 회람하여야 한다.

A.1.5

회사는 그 이사를 피고로 하는 소송에 대비하여 적절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arrange appropriate insurance) 한다.

A.2 이사회의장 및 최고상근이사(Chairman and chief executive)

주요원칙(Main Principle)

회사의 최고경영진(the head of the company)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운영과 회사의 사업 운영에 관한 업무집행자로서의 책임을 명확히 분리하여야 한다. 어떠한 개인도 무제한의 결정권(unfettered power of decision)을 가질 수 없다.

보조원칙(Supporting Principle)

이사회의장은 이사회 주재자(leadership of the board)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이사회의 역할이 모든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사회의 의제를 설정한다(setting its agenda). 이사회의장은 이사가 정확하고 적시에 그리고 명확한 정보(accurate, timely and clear information)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사회의장은 주주와의 실효성 있는 의사소통(effective communication)을 하여야 한다. 이사회의장은 특히 비상근 이사의 실효성 있는 공헌을 촉진하고, 상근이사와 비상근이사 간에 건설적인 관계(constructive relations)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규범조항(Code Provisions)

A.2.1

이사회회장 및 최고상근이사의 역할은 동일한 개인이 양 지위를 차지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있다. 이사회회장과 최고상근이사 간의 책무는 명확히 분리되어야 하고(clearly established), 서면으로 규정되어야 하며(set out in writing)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A.2.2¹⁵⁾

이사회회장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후술하는 A.3.1에서 정하는 독립성기준(independence criteria)을 충족시켜야 한다. 최고상근이사(chief executive)는 계속하여 동일회사의 이사회 의장에 취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사회가 예외적으로 최고상근이사가 이사회회장을 겸하게 한다는 취지를 결정하는 경우, 이사회는 사전에 주요주주와 협의를 하고 선임의 시점 및 차기연차보고서(at the time of the appointment and in the next annual report)에 그 결정이유에 대하여 주주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A.3 이사회의 균형성 및 독립성(Board balance and independence)

주요원칙(Main Principle)

이사회는 특정한 개인 또는 일부의 개인집단(small group of individual)이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상근이사 및 비상근이사(특히 독립비상근이사) 간 균형을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조원칙(Supporting Principle)

이사회의 규모가 비효율적으로 지나치게 커서는 아니 된다. 이사회 규모는 구성원의 기능과 경험 간 균형(the balance of skills and experience)이 그 사업상 필요에 비추어 적절하고, 지나친 혼란 없이(without undue disruption) 이사회 구성을 변경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여야 한다.

15) 이 조항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이사회의장이 선임된 연도에 보고를 하면 족하다(Compliance or otherwise with this provision need only be reported for the year in which the appointment is made).

권력과 정보가 1인 또는 2인의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상근이사와 비상근 이사들은 이사회에서 뚜렷한 존재감(strong presence)을 가져야 한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위원을 선택하고 특정한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게 한다는 의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이외의 자는 누구든지 지명위원회, 감사위원회 또는 보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권한이 없지만, 위원회의 초청을 받은 자는 출석할 수 있다.

규범조항(Code Provisions)

A.3.1

이사회는 연차보고서에서 이사회의 구성원 중 독립성을 갖는다고 평가되는 모든 비상근 이사의 성명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¹⁶⁾ 이사회는 당해이사가 성격 및 판단(character and judgement)에 있어서 독립성을 가지는지의 여부, 이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관계 혹은 사정(relationship or circumstance)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이하의 경우를 포함하여 이사회의 판단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관계 또는 사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사가 독립성을 갖는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 이사가 과거 5년 내에 그 회사 또는 그 회사가 속한 그룹의 사용인이었던 경우
- ▣ 이사와 회사와의 사이에 직접, 중요한 사업상 관계를 실제로 갖고 있거나 또는 과거 3년 내에 그와 같은 관계를 갖고 있었는지 혹은 회사와의 사이에 중요한 사업상의 관계를 갖고 있는 파트너, 주주, 이사 또는 상위사용인(senior employee)으로서 그와 같은 관계를 실제로 가지고 있거나 혹은 과거 3년 내에 가지고 있었던 경우
- ▣ 이사가 이사급여 이외에 회사로부터 별도의 보수를 받았거나 또는 실제로 이를 받고 있는 경우 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share option) 혹은 경영성과연동형보수제도

16) 앞에서 기술한 A.2.2에 따르면 이사회회장을 선임함에 있어서 동 규정에서 정하는 독립성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그 후 독립성기준은 이사회회장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A.2.2 states that the chairman should, on appointment, meet the independence criteria set out in this provision, but thereafter the test of independence is not appropriate in relation to the chairman.).

(performance-related pay scheme)의 수혜대상인 경우, 또는 회사의 연금제도의 수급자인 경우(a member of the company's pension scheme)

- 이사가 회사의 고문(company's advisers), 이사 또는 상위사용인 등과 가까운 인척관계(close family ties)에 있는 경우
- 이사에 대하여 이사상호취임관계(cross-directorship)가 있는 경우 그리고 다른 회사 또는 단체와의 관련성을 통하여 다른 이사와의 사이에 중요한 연결 관계(significant links)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이사가 주요주주(significant shareholder)를 대표하는 경우
- 이사의 재임기간이 최초의 선임 시부터 9년을 초과하는 경우

A.3.2

이사회의 구성원 중 이사회의장을 제외하고 적어도 반수(at least half the board)이상은 이사회로부터 독립성을 갖는다고 판단되는 비상근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소규모 회사(small company)¹⁷⁾는 예외이다. 소규모회사는 적어도 2인 이상의 독립적인 비상근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A.3.3

이사회는 독립적인 비상근이사 중 1인을 상위독립이사(senior independent director)로 임명하여야 한다. 주주는 이사회의장, 최고상근이사 또는 재무담당이사를 경유하는 통상의 경로(normal channels)를 통하여는 그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없거나 또는 통상의 경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상위독립이사를 직접 접촉할 수 있다.

A.4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임명

주요원칙(Main Principle)

신임이사의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임명에 관하여는 공식적이고, 엄격하며 투명한 절차(formal, rigorous and transparent)를 두어야 한다.

보조원칙(Supporting Principle)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임명은 피임명자의 장점과 객관적 기준(objective criteria)을 고려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피임명자(appointee)가 그 직무에 힘을 쏟는데(devote to the job)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함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는 이사회의장에게 특히 중요하다.

이사회는 회사 내부에서 이사회의 기능과 경험의 적절한 균형(appropriate balance of skills and experience)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임명 및 상위경영자(senior management)의 임명에 관한 질서 있는 후계자결정계획을 준비하여야 한다.

규범조항(Code Provisions)

A.4.1

회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임명에 관한 절차를 주도하고, 이사회에 추천을 하는 지명위원회(nomination committee)를 두어야 한다. 지명위원회의 과반수(a majority of members of the nomination committee)는 독립적인 비상근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사회의장 또는 독립적인 비상근이사가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명위원회가 이사회의장 후임자의 임명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 이사회의장은 지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 지명위원회는 그 역할 및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설명한 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을 이용 가능한 상태로 두어야 한다.¹⁸⁾

A.4.2

지명위원회는 이사회에서의 기능, 지식 및 경험의 균형을 평가하여야 하고, 그 평가에 비추어 특정 이사의 임명 시 요구되는 역할 및 능력을 기재한 설명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17) 소규모회사는 보고년도 직전 년도를 내내 FTSE 350 이하의 회사를 말한다(A smaller company is one that is below the FTSE 350 throughout the year immediately prior to the reporting year).

18) 당해 정보를 이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요건은 그 정보에 대한 청구가 있었던 때에 이용에 제공하고, 그것을 회사의 웹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준수하게 된다(The requirement to make the information available would be met by making it available on request and by including the information on the company's website).

A.4.3

지명위원회는 이사회의장의 임명에 관하여 위기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업무수행기대시간(time commitment expected)의 평가를 포함한 직무명세(job specification)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사회의장의 그 밖에 중요한 책무(significant committee)에 대하여는 임명 전에 이사회에 알려야하고 연차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책무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그 때마다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차기연차보고서에도 포함시켜야 한다. 누구든지 FTSE 100에 속하는 회사의 이사회의장직을 겸임하여서는 아니 된다.¹⁹⁾

A.4.4

비상근이사의 임명과 관련 있는 조항과 조건(terms and conditions)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²⁰⁾ 임용계약서(letter of appointment)에는 업무수행기대시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 밖에 비상근이사의 중요한 책무는 그에 따르는 시간의 대략적인 설명과 함께 임명 전 이를 이사회에 알려야하고, 이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A.4.5

이사회는 상근이사가 FTSE 100에 속하는 회사 중 2개 이상의 회사의 비상근이사를 겸임하고 있다는 사실 및 FTSE 100에 속하는 회사의 이사회의장직에 취임하는 것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A.4.6

연차보고서에는 별도의 장을 두어 지명위원회의 활동상황을 기술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지명위원회가 이사회 구성원의 임명에 관하여 사용한 절차가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19) 이 조항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이사회의장이 선임된 연도에 보고를 하면 족하다(Compliance or otherwise with this provision need only be reported for the year in which the appointment is made).

20) 비상근이사의 임명과 관련 있는 조항 및 조건은 이를 당해 회사의 등록사무소에 통상의 영업시간 내에 그리고 정기주주총회에서(총회 개최 전 15분 간 그리고 총회의 개최기간 중) 모든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The terms and conditions of appointment of non-executive directors should be made available for inspection by any person at the company's registered office during normal business hours and the AGM(for 15minutes prior to the meeting and during the meeting)).

이사회회의장 또는 비상근이사의 임명에 대하여 사외의 자문위원(consultants) 및 공개광고(open advertising)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A.5 정보 및 전문성향상(Information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주요원칙(Main Principle)

이사회는 그 의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한 형식과 질을 갖춘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이사는 이사회에 참가하는데 필요한 연수를 받아야 하고, 정기적으로 그들의 기능과 지식(skills and knowledge)을 쇄신하고 새롭게 하여야(update and refresh) 한다.

보조원칙(Supporting Principle)

이사회회의장은 이사가 정확하고 적시에 명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할 책임을 부담한다. 경영자가 그와 같은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이사는 필요한 경우 설명 또는 추가정보(clarification or amplification)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사회회의장은 이사가 이사회 및 이사회 내부 위원회에서 자기의 역할을 이행하는데 요구되는 기능, 지식 및 회사와의 친밀한 관계(skills and the knowledge and familiarity with the company)를 항상 새롭게 쇄신하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는 이사의 지식 및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회사비서의 직무(the company's secretary's responsibilities)는 이사회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와 그 위원회 및 상위경영자(senior management)와 비상근이사 간 각각 양질의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는데 있다. 그리고 연수를 촉진하고 필요한 전문성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

회사비서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이사회의장을 통하여 이사회에 조언할 책임을 부담한다.

규범조항(Code Provisions)

A.5.1

이사회장은 신입이사가 이사회 참가와 관련하여 충분하고, 공식적인 그리고 맞춤형 연수(a full, formal and tailored induction)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는 그 일환으로서 주요 주주에 대하여 신입비상근이사와 만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A.5.2

이사회는 이사, 특히 비업무집행이사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독립적인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A.5.3

모든 이사는 이사회 절차가 준수되도록 하여야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회사비서로부터의 조언과 조력을 구할 수 있다. 회사비서의 임명과 해임(appointment and removal of the company secretary)은 전체적으로 이사회가 다루어야할 사항으로 한다.

A.6 성과평가(Performance evaluation)

주요원칙(Main Principle)

이사회는 이사회 그 자체의 성과와 그 위원회 및 개개 이사의 성과에 관한 공식적이고 엄격한 연간평가를 하여야 한다.

보조원칙(Supporting Principle)

이사 개개인에 대한 성과평가는 각 이사가 그 직무에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직무에 계속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지(이사회와 위원회의 회의 및 기타 업무의 의무에 대한 업무수행기대시간(commitment of time)을 포함한다)를 명백히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사회장은 성과평가의 결과에 기초하여 이사회 장점을 인식하고 그 약점에 대처하며(recognising the strengths and addressing the weakness), 필요에

따라 새로운 이사의 임명을 제안하거나 또는 이사의 사임(resignation of directors)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규범조항(Code Provision)

A.6.1

이사회는 연차보고서에 이사회, 그 위원회 및 개개의 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방법을 기술하여야 한다. 비상근이사는 상위독립이사(senior independent director)의 주도 하에 상근 이사의 의견도 고려하여 이사회장의 성과를 평가할 책임을 진다.

A.7 재선임(Re-election)

주요원칙(Main Principle)

모든 이사들은 계속적으로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둘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정기적인 재선임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사회는 계획적이고 점진적으로 이사회 구성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규범조항(Code Provisions)

A.7.1

모든 이사들은 임명 후 최초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로 선임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서 재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선임 또는 재선임 절차에 따르는 이사의 성명별로 주주가 이사의 선임에 대하여 정보에 의거한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상세한 경력 및 기타 관련 정보를 병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A.7.2

비상근이사는 소정의 기간(specified terms)에는 계속적으로 임명되는 것으로 하지만, 재선임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사의 해임에 관한 회사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비상근 이사의 선임의안에 첨부된 서면으로 이사회에서 그 자가 선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주주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사회장은 재선임을 제안하는 경우 공식적인 성과평가의 결과 각 후보자가 계속하여 효과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그 직무에 지속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주주들에게 확신시켜주어야 한다. 비상근이사의 임기가 6년(예를 들면 3년 임기의 재임)을 초과하는 경우는 특별히 엄격한 검토를 거쳐야 하고(should be subject to particularly rigorous review),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점진적인 교체의 필요성(the need for progressive refreshing of the board)을 고려하여야 한다. 비상근이사는 9년(예를 들면 3년 임기의 제3기)을 초과하여 재임하여도 무방하지만, 매년 재선임 절차(annual re-election)에 따라야 한다. 9년을 초과하여 존재하는 것은 비상근이사의 독립성판단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B. 보수(Remuneration)

B.1 보수²¹⁾의 수준과 구성(The Level and Make up of Remuneration)

주요원칙(Main Principle)

보수의 수준은 회사를 성공적으로 경영하는데 요구되는 자질을 갖춘 이사를 유인하고, 확보하며 동기를 줄 수 있을 정도로 충분(sufficient to attract, retain and motivate)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근이사의 보수 중 중요한 부분(significant proportion)은 보수액을 회사 및 당해 개개인 업적과 연동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보조원칙(Supporting Principle)

보수위원회는 다른 회사와 비교하여 당해 회사를 어디에 위치하게 할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수위원회는 성과의 개선이 수반되지 않은 채 보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다른 회사와의 비교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보수위원회는 연봉을 증액(annual salary increase)함에 있어서는 특히 동일 그룹에 속한 다른 회사의 임금과 고용조건(pay and employment conditions)을 고려하여야 한다.

21) 이사의 임명계약이 종결된 경우에 주주는 이사의 보수에 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의 여부,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것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통상산업부는 2003년 9월 30일을 기한으로 하여 의견을 구하여 왔다(Views have been sought by 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by 30 September 2003 on whether, and if so how, further measures are required to enable shareholders to ensure that compensation reflects performance when director's contracts are terminated : See "Rewards for Failure": Directors' Remuneration Contracts, performance and severance, June 2003).

규범조항(Code Provisions)

보수정책(Remuneration policy)

B.1.1

경영성과연동형보수(performance-related elements of remuneration)는 상근이사의 보수총액(total remuneration package)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근이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일치시켜야 하고, 상근이사가 최고수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강한 동인을 부여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경영성과연동형보수구조를 고안하는 경우 보수위원회는 동 규범의 부칙A(Schedule A) 조항에 따라야 한다.

B.1.2

상근이사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은 상장규칙의 관련 조항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부여할 때의 추가보다 낮게 권리행사가가격을 책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B.1.3

비상근이사의 보수수준은 업무수행기대시간 및 그 직무상의 책임을 반영하여야 한다. 비상근이사의 보수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외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주주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비상근이사가 이사 퇴임 후 최소 1년간은 이를 보유하여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보유는 비상근이사의 독립성 판단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A.3.1 참조).

B.1.4

회사가 상근이사에 대하여 다른 회사의 비상근이사를 겸임하는 것을 허용하는 때 보수 보고서(remuneration report)²²⁾에는 당해 이사가 보수를 지급받았는지의 여부, 지급받았다면 그 내용에 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2) 이사의 보수보고서에 관한 규칙에서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As required under the Directors' Remuneration Report Regulations).

서비스계약과 보상(Service Contracts and Compensation)

B.1.5

보수위원회는 이사의 임명계약조항(directors' terms of appointment)이 임기만료 전에 임명계약이 종료한 경우 어떠한 보상약속(compensation commitments)(연금거출금(pension contributions)과 기타 모든 보상을 포함한다)을 하였는지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한다. 그 목적은 성과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보수위원회는 퇴임이사의 손실경감의무(obligation to mitigate)를 반영하여 보상액을 감액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B.1.6

해임통지기간 또는 계약기간(notice or contract period)은 1년 이하로 설정하여야 한다. 회사의 외부에서 채용된 신입이사에 대하여 그 보다도 장기의 해임통지기간 또는 계약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 그 기간은 최초의 기간(initial period)의 경과 후 이를 1년 이하로 단축하여야 한다.

B.2 절차(Procedure)

주요원칙(Main Principle)

회사는 상근이사의 보수에 관한 정책을 설정하고, 각 이사의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식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사는 누구든지 자기의 보수결정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조원칙(Supporting Principle)

보수위원회는 이사회장과 최고상근이사(chief executive) 모두 또는 일방에 대하여 다른 상근이사의 보수에 관한 보수위원회의 제안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보수위원회는 상근이사의 보수에 관한 자문위원(remuneration consultants)의 채용에 대하여도 책임을 져야한다. 상근이사 또는 상위경영자(senior management)가 보수위원회에 조언 또는 지원(advising or supporting)을 하는 경우에는 이익충돌(conflicts of interest)을 인식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이사회장은 회사가 보수에 관하여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필요에 따라, 주요 주주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규범조항(Code Provisions)

B.2.1

이사회는 3인 이상의 위원 또는 소규모회사²³⁾의 경우는 2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 위원회의 위원은 모두 독립적인 비상근이사이어야 한다. 보수위원회는 그 역할 및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설명한 동 위원회의 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을 활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²⁴⁾ 보수자문위원(remuneration consultants)을 채용한 때에는 보수자문위원이 회사와 다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설명도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B.2.2

보수위원회는 수권에 의거하여 연금수급권(pension rights)과 일체의 보상지급액(any compensation payments)을 포함한 모든 상근이사 및 이사회장의 보수를 정할 책임을 부담한다. 보수위원회는 상위경영자(senior management)의 보수수준 및 보수구조에 대하여 권고하고, 이를 감시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서의 상위경영자에 대한 개념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이사회 하부의 경영진 중 제1순위의 자(the first layer of management)를 포함하여야 한다.

B.2.3

이사회 그 자체 또는 부속정관(Articles of Association)으로 요구되는 경우에는 주주가 부속정관에서 정하는 제한 범위 내에서 비상근이사의 보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정관으로 인정되는 때 이사회는 최고상근이사(chief executive)를 위원으로 포함하는 경우도 있는 위원회에 그 책무를 위임할 수 있다.

23) 각주 18) 참조.

24) 각주 19) 참조.

B.2.4

모든 신규 장기인센티브제도(new long-term incentive scheme)(상장규칙에서 정의하는 것)의 도입 및 기존제도의 중요한 변경에 대하여는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상장 규칙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C. 회계책임 및 회계감사(Accountability and Audit)

C.1 재무보고

주요원칙(Main Principle)

이사회는 회사의 상황과 전망에 대하여 균형을 취하여야 하고, 이해할 수 있는 평가를 하여야 한다.

보조원칙(Supporting Principle)

이사회는 균형을 취하고 이해할 수 있는 평가를 하여야 하는 책임을 부담하는데, 제정법상 요건으로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뿐만이 아니라 중간보고서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타 공표보고서(interim and other price-sensitive public reports) 및 규제당국에 제출하는 보고서까지 미친다.

규범조항(Code Provisions)

C.1.1

이사회는 연차보고서에 계산 서류의 작성과 관련된 이사회의 책임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하고, 이사회의 보고책임에 관한 회계감사인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C.1.2

이사회는 당해 기업이 계속기업(going concern)이라는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전제 또는 조건(supporting assumption or qualifications)을 첨부하여야 한다.

C.2 내부통제(Internal Control)²⁵⁾

주요원칙(Main Principle)

이사회는 주주의 투자 및 회사자산(shareholder's investment and the company's assets)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전한 내부통제체제(sound system of internal control)를 유지하여야 한다.

규범조항(Code Provisions)

C.2.1

이사회는 최소한 매년 1회는 기업그룹의 내부통제체제의 유효성을 점검하여야 하고, 주주에게 내부통제체제를 점검하였다는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검은 재무, 업무 및 법령준수에 관한 통제와 위험관리체제(financial, operational and compliance controls and risk management systems)를 포함하는 모든 중요한 통제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C.3 감사위원회 및 회계감사인(Audit Committee and Auditors)²⁶⁾

주요원칙(Main Principle)

이사회는 재무보고 및 내부통제에 관한 원칙(financial reporting and internal control principles)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숙고하였다는 사실 및 당해회사의 회계감사인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식적이고 투명한 구조(formal and transparent arrangements)를 확고히 하여야 한다.

규범조항(Code Provisions)

C.3.1

이사회는 3인 이상의 위원 또는 소규모회사²⁷⁾의 경우는 2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감사

25) 턴벌지침이 통합규범이 부분의 적용방법을 시사하고 있다(The Turnbull guidance suggests means of applying this part of the Code).

26) 스미스지침이 통합규범이 부분의 적용방법을 시사하고 있다(The Smith guidance suggests means of applying this part of the Code).

27) 각주 18) 참조.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 위원은 전원이 독립적인 비상근이사이어야 한다. 이사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적어도 1인은 최근에 적절한 재무적인 경험(recent and relevant financial experience)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C.3.2

감사위원회의 주된 책무 및 역할에 대하여는 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을 기재한 서면에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이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회사의 재무제표 및 회사의 재무성과(company's financial performance)에 관한 모든 공식발표의 완전성을 감시하고, 재무제표 등에 포함된 중요한 재무보고상의 판단(significant financial reporting judgements)을 점검한다는 사실.
- 회사의 내부재무통제를 점검하고, 독립적인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특별위험위원회(separate board risk committee) 또는 이사회 스스로가 취급하는 뜻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의 내부통제체제 및 위험관리체제를 점검한다는 사실.
- 회사의 내부감사기능의 유효성을 감시하고, 점검한다는 사실.
- 외부회계감사인(external auditors)의 임명, 재임명(re-appointment) 및 해임 시 이사회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승인을 구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의안에 대한 권고를 이사회에 대하여 행한다는 사실 및 외부회계감사인의 보수 및 임명계약조항을 승인한다는 사실.
- 관련하는 영국의 전문직 및 규제상의 요건(professional and regulatory requirements)을 고려하여 외부회계감사인의 독립성 및 객관성과 함께 감사절차의 실효성을 감시하고 점검한다는 사실.
- 외부회계감사법인(external audit firm)에 의한 비감사업무의 제공에 관한 윤리지침(ethical guidance)을 고려하여 외부회계감사인의 비감사업무에 종사하는 것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한다는 사실 및 감사위원회가 이사회에 보고하여 대책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문제를 특정하고, 강구하여야할 조치에 관하여 권고한다는 사실.

C.3.3

감사위원회는 그 역할과 이사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권한을 포함하는 감사위원회의 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은 이를 이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²⁸⁾ 연차보고서에 독립적인 장(separate section of the annual report)을 마련하여 감사위원회가 이러한 책임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행한 활동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C.3.4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종업원이 재무보고 또는 기타의 문제에 야기될 수 있는 부적절한 사항에 관한 우려를 비밀리에 전달할 수 있는 절차(arrangements)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목적은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독립적인 조사와 적절한 사후 조치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C.3.5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활동의 유효성을 감시하고, 조사를 하여야 한다. 내부감사기능이 없는 때 감사위원회는 매년 내부감사기능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이사회에게 권고하여 한다. 그리고 내부감사기능이 없는 점에 대하여는 연차보고서의 관련 장에 기술하여야 한다.

C.3.6

감사위원회는 외부회계감사인의 임명, 재임 및 해임에 관하여 권고를 하여야 하는 제1차적인 책임(primary responsibility)을 부담한다. 이사회가 감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때에는, 이사회는 연차보고서 및 임명 또는 재임을 권고하는 모든 문서에 당해권고에 대하여 설명하는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기술하고, 이사회가 다른 입장을 취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8) 각주 19) 참조.

C.3.7

연차보고서는 주주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이 비감사업무를 수행한다면 회계감사인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여야 한다.

D. 주주와의 관계(Relations with Shareholders)

D.1 기관주주와의 대화(Dialogue with Institutional Shareholders)

주요원칙(Main Principle)

회사는 목적에 대한 공통의 이해에 기초하여 주주와 대화를 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주주와 만족할만한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할 책임을 부담한다.²⁹⁾

보조원칙(Supporting Principle)

이사회회장(그리고 상위독립이사 및 기타 관련 이사)은 대부분의 주주의 접촉점이 최고 상근이사 및 재무담당이사(finance director)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주요주주의 관심사항과 고민(issues and concerns)을 이해하기 위하여 주요주주와 충분한 접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무슨 방식을 취하든지, 가장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주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규범조항(Code Provisions)

D.1.1

이사회회장은 주주의 의견이 이사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사회회장은 기업 지배구조 및 전략에 대하여 주요주주와 논의하여야 한다. 비상근이사는 주요주주와의 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고, 주요주주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상위 독립이사(senior independent director)는 주요주주의 관심사항과 고민에 대하여 균형을 취할 수 있도록 주요주주와 충분한 회의를 가져야 한다.

29) 이러한 원칙 또는 조항들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법률의 일반적인 요건에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Nothing in these principles or provisions should be taken to override the general requirements of law to treat shareholders equally in access to information).

D.1.2

이사회는 연차보고서에 이사회의 구성원, 특히 비상근이사가 직접대면(direct face-to-face)에 의한 대화와 주주의 견해에 관한 기업분석가 또는 브로커의 설명 및 조사(analysts' or brokers' briefing and surveys)를 통하여 회사에 관한 주요주주의 견해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사회가 취한 조치를 기술하여야 한다.

D.2 정기주주총회의 적극적 이용(Constructive of the AGM)

주요원칙(Main Principle)

이사회는 투자자와 의사를 소통하고, 참가자들을 고무하기 위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이용 하여야 한다.

규범조항(Code Provisions)

D.2.1

회사는 모든 의결권 대리행사(proxy votes)수를 집계하여야 하고, 1주 1의결권에 의한 투표(poll)가 청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의안이 거수(shoe of hands)로 처리된 후 각 의안에 대하여 제출된 위임장의 수, 당해의안에 대한 찬성표와 반대표의 대조(balance for and against the resolution) 및 기권 의결권수(number of abstentions)를 명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의결권행사(votes cast)를 적정하게 접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D.2.2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실질적으로 상이한 사안(substantially separate issue)은 각각 별개의 의안(a separate resolution)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특히 연차보고서 및 연차계산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단독 의안으로 하여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D.2.3

이사회회장은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및 지명위원회의 각 위원장이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도록 모든 이사를 출석시킬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D.2.4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의 소집통지(Notice oh the AGM) 및 관련 서류가 최소한 회일의 20일 전에는 주주에게 발송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제2조 기관주주(Institutional Shareholders)

E. 기관주주(Institutional Shareholders)³⁰⁾

E.1 회사와의 대화(Dialogue with companies)

주요원칙(Main Principle)

기관주주는 공통의 목적에 관한 이해에 기초하여 회사와 대화를 하여야 한다.

보조원칙(Supporting Principle)

기관주주는 기관주주위원회의 “기관주주와 대리인의 책임의 원칙(Institutional Shareholders’ Committee’s “The Responsibilities of Institutional Shareholders and Agents Statement of Principles)”³¹⁾에서 열거하고 있는 원칙을 적용하고, 이를 펀드운용자 계약(fund manager contract)에 반영시켜야 한다.

E.2 기업지배구조 공시에 관한 평가

주요원칙(Main Principle)

회사의 지배구조의 구조(governance arrangements), 특히 이사회의 구조와 구성을 평가 할 때, 기관주주는 주목할 만한(drawn to their attention) 모든 관련 요소에 필요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30) 기관주주가 투자운용 또는 의결권행사업자 등과 같은 대리인을 자주 선임하고, 기관주주 대신에 행위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은 필요에 따라 기관주주의 대리인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Agents such as investment managers , or voting services , are frequently appointment by institutional shareholders to act on their behalf and these principles should accordingly be read as applying where appropriate to the agents of institutional shareholders).

31) Available at website: www.investmentuk.org.uk/press/2002/20021021-01.pdf

보조원칙(Supporting Principle)

기관주주는 동 규범에서의 일탈행위에 대한 설명을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하고, 각 사안에 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기관주주는 회사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는 때에는 합당한 서면으로 설명을 하고, 상호 대화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기관주주는 회사의 지배 구조의 평가에 대하여 공란점검방식(box-ticking approach)을 채택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관주주는 회사의 규모와 복잡성 및 당해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 및 과제의 성질(nature of the risks and challenges it faces)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E.3 주주의 의결권행사

주요원칙(Main Principle)

기관주주는 충분히 숙고를 한 후 의결권을 행사할 책임을 부담한다.

보조원칙(Supporting Principle)

기관주주주는 자기의 의결권행사의 의도를 실행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기관주주는 청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 의안 및 재량의 여지가 없는 위임장(non-discretionary proxies)을 제출한 의안의 비율에 관한 정보를 피위임자(clients)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요주주는 적합하고 실행 가능한 때에는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회사와 증권 대행기관(registrars)은 이를 촉진하여야 한다.

부칙 A(Schedule A) 경영성과연동형보수제도에 관한 규정

(Provisions on the design of performance related remuneration)

1. 보수위원회는 이사가 연차상여금(annual bonuses)을 수령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이사가 연차상여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다면, 경영성과조건(performance conditions)은 적절하고, 주주의 가치를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고안

되어야 한다. 그리고 상한선(upper limits)이 설정되고, 공시되어야 한다. 상여금의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고, 상당기간 보유하게 하게 할 수도 있다.

2. 보수위원회는 이사가 장기인센티브제도(long-term incentive scheme)에 의거한 이익을 수령할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전통적인 주식매수선택권제도에 대하여는 그 밖의 다른 유형의 장기인센티브제도와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통상의 경우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식교부(shares granted) 또는 그 밖의 종류의 유예보수(deferred remuneration)를 수령할 권리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식매수선택권도 행사할 수 없다. 이사는 권리의 부여 또는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일정기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 및 관련 조세채무(acquisition and associated tax liabilities)에 대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3. 새로운 장기인센티브제도가 제안된 때에는 주주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기존의 제도를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기존의 제도를 편입시키는 때는 적어도 새로운 장기인센티브제도가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제도전반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잠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보수의 총액은 과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모든 인센티브제도에 의거한 지급(payouts) 또는 부여(grants)는 기존의 주식매수선택권 제도(existing share option schemes)에 기초한 새로운 부여도 포함하고, 회사의 목적을 반영하여야 하며, 달성하기 어려운 경영성과기준(challenging performance criteria)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상근이사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및 그 밖의 장기인센티브제도에 기초한 부여물은 통상적으로 일괄하여 대량으로 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계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6. 원칙적으로 연금은 기본급(basic salary)만을 대상으로 한다.
7. 보수위원회는 기본급의 증액 및 그 밖의 연금대상보수(pensionable remuneration)의 변경으로 인하여 회사 발생하는 연금면의 영향 및 관련 비용에 관하여 퇴임직전에 있는 이사(directors close to retirement)에 대하여는 특별히 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B(Schedule B) 비상근이사의 책임에 대한 지침 : 주의, 기능 및 근면성
(Guidance on liability of non-executive directors : care, skill and diligence)

1. 비상근이사와 상근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동일한 법적 의무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회사업무에 전념하는 시간은 비상근이사가 상근이사에 비하여 훨씬 적고, 비상근 이사에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회사업무에 관한 상세한 지식 및 경험은 일반적으로 상근이사보다 적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비상근이사에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지식, 기능 및 경험을 평가한 후, 따라서 비상근이사가 가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주의, 기능 및 근면성에 대한 평가와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2. 이 문맥에서는 이하의 동 규범의 요소와 특히 관련성이 있다.
 - (1) 이사가 그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동 규범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1) 이사의 임명계약서는 업무수행기대시간(expected time commitment)을 기재하여야 한다(규범조항 A.4.4).
 - 2) 이사회는 그 의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형식과 질(a form and of a quality)을 갖춘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사회장은 이사회에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책임을 부담한다(원칙 A.5).
 - (2) 비업무집행이사는 스스로
 - 1) 적절한 연수를 받고, 자기의 기능 지식 및 회사와의 친밀한 관계를 정기적으로 쇄신하고 새롭게 하여야 하고(원칙 A.5 및 규범조항 A.5.1)
 - 2) 적절한 설명 또는 추가정보(appropriate clarification or amplification of information)를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그에 따른다(원칙 A.5 및 규범조항 A.5.2).
 - 3) 회사의 경영 또는 제안된 행위에 문제점이 있는 때에는 그 문제점이 이사회에서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사회 의사록(board minutes)에 기록하여야 한다(규범조항 A.1.4). 그리고
 - 4) 사직을 함에 있어서 그와 같이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으면, 이사회에게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규범조항 A.1.4).

3. 특정 상황에서 비상근이사가 이사로서 회사에 부담하는 주의, 기능 및 근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은 각 이사의 몫이다. 어떤 자가 그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 법원은 관련하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것이 비상근이사의 책임문제와 관련하는 때에는 위의 항목을 유의하여야 한다.

부칙 C(Schedule C) 기업지배구조체제의 공시 (Disclosure of corporate governance arrangements)

전문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상장규칙(Listing Rule)은 연차보고서 중에 동 규범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기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참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특히 공시에 관한 동 규범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연차보고서에는 이하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이사회의 운영상황에 대한 설명. 여기에는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사항과 경영자에게 위임된 사항에 관한 회사경영상충부의 설명(a high level statement)이 포함되어야 한다(A.1.1).
- 2) 이사회회장, 부의장(존재하는 경우), 최고상근이사(the chief executive), 상위독립이사(the senior independent director) 및 지명위원회 · 감사위원회 · 보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A.1.2).
- 3) 이사회 및 앞의 2)의 개최회수와 각각의 회의에서 이사의 출석상황(A.1.2).
- 4) 이사회에서 독립성을 갖는다고 평가되는 비상근이사의 성명과 필요한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A.3.1).
- 5) 이사회회장, 그 밖에 중요한 책무 및 당해연도 중에 발생한 일체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A.4.3).
- 6) 이사회, 위원회 및 개개의 이사의 실적평가 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A.6.1).
- 7) 이사회 구성원, 특히 비상근이사가 당해회사에 관한 주요주주의 견해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사회가 취한 조치를 기술하여야 한다(D.1.2).

연차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이사회 구성원의 임명에 관한 절차 및 이사회회장 또는 비상근이사의 임명에 대하여 사외의 자문위원(consultants)과 공개광고(open advertising)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지명위원회의 활동에 관하여는 별도의 장에서 기술하여야 한다(A.4.6).
- 2) 2002년 이사보수보고서규칙(Directors' Remuneration Reporting Regulations)이 요구하는 보수위원회의 활동상황에 관한 설명 및 상근이사가 다른 회사의 비상근이사를 겸임하는 때에는 당해이사가 보수를 수령하는지의 여부, 수령한다고 하면, 그 내용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B.1.4).
- 3) 계산 서류의 작성과 관련된 이사회의 책임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하고, 이사회의 보고 책임에 관한 회계감사인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C.1.1).
- 4) 당해 기업이 계속기업(going concern)이라는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전제 또는 조건을 첨부하여야 한다(C.1.2).
- 5) 이사회가 기업그룹의 내부통제체제의 유효성을 점검하였다는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C.2.1).
- 6) 감사위원회가 자기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행한 활동상황을 설명하는 독립의 장을 두어야 한다(C.3.3).
- 7) 내부감사기능이 존재하지 않는 때는 그 이유를 기술하여야 한다(C.3.5).
- 8) 이사회가 외부회계감사인의 임명, 재임임 또는 해임에 관한 감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들이지 않는 때에는, 당해권고에 대하여 설명하는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기술하고, 이사회가 다른 입장을 취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C.3.6).
- 9) 회계감사인이 비감사업무를 수행한다면, 회계감사인의 객관성과 독립성(objectivity and independence)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여야 한다(C.3.7).

이하의 정보는 활용 가능한 상태로 두어야 한다.(이 요건은 관련 정보에 대한 청구가 있는 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회사의 웹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충족된다.)

- 1) 지명위원회, 보수위원회 및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이사회로부터 각 위원회에 위임된 권한에 대하여 설명하는 각 위원회의 위임사항(A.4.1, B.2.1, C.3.3)
- 2) 비상근이사의 임명에 관한 조항 및 조건(A.4.4)
- 3) 보수자문위원(remuneration consultants)을 채용한 때에는 보수자문위원이 회사와 다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설명(B.2.1)

이사회는 이사의 선임 또는 재선임 의안에 첨부된 서면으로 주주에 대하여 이하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1) 주주가 이사의 선임 또는 재선임에 대하여 정보에 의거한 판단을 하는데 충분한 상세한 정보(A.7.1)
- 2) 이사회에서 특정 개인이 비상근이사에 선임되었어야만 하는 지에 관한 이유(A.7.2)
- 3) 비상근이사의 재선임과 관련하여 이사회의장이 공식적인 성과평가(formal performance evaluation)에 따라 각 후보자가 계속하여 효과적으로 실적을 향상시키고, 그 직무에 계속적으로 헌신할 수 있다는 취지의 확인사항 및 이사회 및 위원회와 그 밖에 업무수행기대시간(A.7.2)

이사회는 주주에게 외부회계감사인의 임명 또는 재임명을 권고하는 서면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1) 이사회가 감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권고에 대하여 설명하는 감사위원회의 의견 및 이사회가 가른 입장을 취한 이유를 명시하는 이사회의 설명(C.3.6)